

#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적 계약 조항의 제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lays of Performance under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김용일(Yong-Il Kim)

승설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사(주저자)

김태인(Tae-In Kim)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교신 저자)

## 목 차

I. 서언

II. 이행지체와 계약위반

III.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

I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elays of Performance under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ory, there exist three clearly distinguishable categories of breach of contract, namely non-performance, non-conforming performance and late performance. In particular, delays of performance are the most common breach of sales contract including late delivery, late payment or late performance of any other obliga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how parties can, through careful drafting, avoid or minimize legal problems in case of delay in performance.

Especially, the export perspective focuses on the seller's interests, which require that sanctions be as lenient as possible if the seller has breached the contract but that there are prompt and adequate sanctions if the buyer has breached the contract. Furthermore, the seller should ensure that a short or medium delay in delivery will not entitle the buyer to declare the contract immediately avoided and take precautions against late payment, including delayed opening of a letter of credit.

Key Words : CISG, Late Delivery, Late Paymen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 I. 서 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하 ‘국제매매협약’ 또는 간단히 ‘협약’이라 한다)<sup>1)</sup>에서는 매도인의 주된 의무로,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소유권이전의무를 규정하며 기타의 의무로, 물품의 특정 및 통지의무, 운송계약의 체결의무, 보험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다.<sup>2)</sup> 그에 대하여 매수인의 주된 의무로,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규정한다.<sup>3)</sup>

협약상의 이러한 의무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계약불이행이라는 용어와 함께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계약위반이란 계약 내용의 포괄적인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불능(non-performance), 불완전 이행(non-conforming performance), 이행지체(late-performance)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이행지체<sup>4)</sup>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들의 일반거래나 매매계약에서 가장 흔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 대표적인 이행지체로는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가 있으며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이행지체의 경우 이러한 시간상의 효과로 인해 상대방은 어떠한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컨대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한지, 아니면 계약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협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고찰하

1)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협약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발효하였다.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총 76개 국가(터키는 2011. 8. 1. 발효)가 그 체약국이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2010년 11월 1일 최종방문) 참조.

2) 협약 제32조 참조.

3) 협약 제53조 참조. 매수인은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협약 제38조 제1항) 또한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협약 제39조 제1항).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수인의 의무는 아니고 단지 책무일 뿐이다.

4) 이행지체는 영미법상의 이행해태(failure of performance)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실적 계약위반(actual or present breach of contract)이라고도 한다. 이행지체의 효과에 있어서, 이행지체는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소멸의 가장 보편적인 사유가 되지만, 모든 이행지체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리를 피해당사자에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이행지체가 성립하여도 그 위반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효과도 매우 달라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행지체가 본질적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인 경우 계약을 소멸할 수 있으나 사소한 계약위반인 경우 계약은 소멸할 수 없고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된다.

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협약의 규정과 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실무 적용에 따른 무역당사자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sup>5)</sup>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협약상의 주제와는 다른 분야를 다룬 것으로 그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제3장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통해 무역실무가들이 계약서 작성 시에 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고는 이행지체와 관련된 외국서적 및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의 소개 및 이에 관한 분석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행지체와 계약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II), 실무상 이러한 이행지체의 효과에 관한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조항을 권고하고자 한다(III). 끝으로 본고는 결언으로서 글을 마무리한다(IV).

## II. 이행지체와 계약위반

### 1. 개요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하나로 채권자지체에 대한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이행지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i)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ii) 그 이행이 자연되어야 하고 (iii)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행지체가 성립되면 그 효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강제이행<sup>6)</sup>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sup>7)</sup>할 수 있는 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sup>8)</sup>할 수 있는 등 채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협약에서의 이행지체는 항상 계약위반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지체가 발생하기 전에 이행

5) 본고에서는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만을 검토하였다. 즉, 매도인의 이행지체(물품인도, 서류인도 등)와 매수인의 이행지체(대금지급, 물품인수 등)가 발생한 모두의 경우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만을 제안하였다.

6)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 제46조 제1항, 제62조).

7) 협약 제45조; 협약 제61조 참조.

8) 협약 제25조; 협약 제49조; 협약 제64조 참조.

이 완료되어야 하는 일자 또는 기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일자와 기일은 당사자들이 정할 수도 있고, 거래관행으로 결정되거나 협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sup>9)</sup>

나아가 협약은 계약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sup>10)</sup>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족하고 그에 대해 매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sup>11)</sup> 따라서 협약상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위반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나, 계약위반이 어느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로 인한 것인 경우,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up>12)</sup>

그러나 면책은 위반당사자(즉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할 수 없었고, 또한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만이 면제됨을 주의해야 한다. 즉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이행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등의 다른 구제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그 밖에 계약위반이 채권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된다.<sup>13)</sup>

## 2. 이행지체에 대한 구제권

이행지체에 관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계약상 다른 의무 위반에서 적용되는 구제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이행지체를 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협약 제79조<sup>14)</sup>의 면책사유로 인한 지체가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만약 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또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sup>16)</sup> 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은 다음과 같

9) H. Flechtnr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2008, p.460.

10)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해설 (박영사, 2010), 177면. 동지, *Id.*, p.461.

11) 협약 제45조 제1항;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정한 협약 제61조 제1항도 동일하다.

12) B. Zeller, *Damage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2009, pp.171-172 참조.

13) 석광현, 전계서, 177면; 동지, *Id.*, pp.181-182; 협약 제80조.

14) 협약 제79조 제1항 : 당사자는 의무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5)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손해액은 계약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아, 동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동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였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협약상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상세히는 D. Saidov, "Methods of Limiting Damage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4, no. 2(2002), p.333 참조.

16) 협약 제49조; 제64조 참조;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구제에 관하여는 B. Zeller, "The Remedy of Fundamental Breach

은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 인정된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란 해당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계약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17)</sup> 둘째로, 상대방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한 후, 동기간의 도래 시까지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해제권은 계약위반의 본질적인지 여부에 무관하게 행사가능하다.<sup>18)</sup>

예정된 이행 기간에 비해 다소간의 이행지체는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주된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행지체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서 완전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당사자가 계약의 정황상 또는 거래관행으로, 시간의 엄수를 계약의 본질로 정하였다면 비록 다소간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도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것이다.<sup>19)</sup>

종종 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협약은 이행을 기다리는 당사자의 재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부가기간(additional period)<sup>20)</sup>의 지정을 규정한다. 예컨대 이행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and the CISG: A Principle Lacking Certainty?",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11, no. 2(2007), pp.219-236 참조.

17) F. Ferrari,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 Sales Convention-25 Years of Article 25 CISG- 25 Y. L & Com. (2006), p.489.

18) 이병문, "유럽매매법원칙상의 매수인의 구제제도", 「무역학회지」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476면 참조.

19) H. Flechtm̄er et al, p.462.

20) 이는 독일법상의 최고((Nachfrist)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바,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왜냐하면 최고는 그 의사가 최고의 효과로서의 이행지체에로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니며 채권자가 이행지체를 원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는 협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매도인이 본질적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추가기간의 부여 없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제b호). 다만, 여러 면에서 조기 결정에 따른 혼란은 야기될 것이다. J.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4th ed., Wolters Kluwer, 2009, pp.290-291; 둘째, P. Huber and A.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234.

21) 협약 제47조; 제49조; 제63조; 제64조.

### 3. 이행지체의 다양한 유형

#### 1) 매도인의 이행지체

##### (1) 물품인도지체

매도인의 이행지체에는 (i) 물품인도지체(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지체) (ii) 서류교부지체 (iii)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것이 물품인도지체이다. 매도인은 계약에 의하여 기일이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에 의하여 기간이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동 기간 내의 어느 기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sup>22)</sup>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인도지체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sup>23)</sup> 나아가 즉각적인 계약해제권을 갖는지는<sup>24)</sup> 당사자의 합의에 달려있다. 당사자는 계약조건에서 이행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물품이 정확히 인도되어야 하는 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이행 기간의 염수를 분명히 명시하였다면, 이행기간의 염수는 계약의 본질이 되며 이러한 경우 심지어 다소간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즉각적으로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sup>25)</sup>

결국 당사자들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요소와 계약의 종료를 허용하는 요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또한 인도가 정확한 날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조기 또는 지연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sup>26)</sup>

계약에 있어서 인도시기가 본질적인가는 거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계절상품이나 급속히 시황이 바뀌는 경우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불안하거나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예컨대 매도인이 크리스마스트리를 12월 1일에 인도해야 하는데, 12월 2일에도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갖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27)</sup>

22) 협약 제33조 참조.

23) 협약 제45조.

24) 협약 제49조 제1항.

25) Mü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vol. 6 (2004) (*Christoph Benicke*) art. 49, 25 n.19; Peter Schlechtriem/Ingebors Schwenger,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precht-CISG (4th ed., 2004) (*Markus Müller-Chen*) art. 49 n.5; Staudinger(*Ulrich Magn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CISG) (2005) art. 49 n.10. H. Flechtnr et al, op. cit., p.463에서 재인용하였음.

26) 定期(Just in Time)條件은 조기 또는 지연인도의 경우에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

27) H. Flechtnr et al, op. cit., p.465.

마찬가지로 인도의 지연기간 동안 물품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거나 그 사이에 매도인이 파산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이때에는 매수인의 보호가 급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매수인의 주된 관심은 매도인이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엄격히 지키는가에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매수인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즉각적인 인도가 매수인에게 본질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아가 인도지연이 이행불능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인도지연은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sup>28)</sup>

### (2) 서류교부지체

매도인 이행지체의 또 다른 종류에는 서류교부지체가 있다.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sup>29)</sup> 당사자들이 물품을 대표하는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매매에 합의한 경우, 서류교부지체에 따른 효과는 전술한 물품인도지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sup>30)</sup> 더욱이 지연이 본질적 계약위반임을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간의 엄수가 계약의 본질임을 명시하거나, 지연시간이 이행불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류교부지체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계약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sup>31)</sup>

### (3) 기타의무의 이행지체

매도인은 물품의 특정 및 통지의무와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의 경우 운송계약과 보험부보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sup>32)</sup> 특히 매도인은 운송물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계약물품이 운송 중 냉장보관이 요구되는 경우, 매도인은 냉장시설이 갖춰진 운송수단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선적물품의 명세는 물론 선적일자, 선박명(또는 운송수단), 운송인의 이름 등을 제공해야 한다.<sup>33)</sup>

28) Id.

29) 협약 제34조. 만약 계약에서 또는 거래의 정황상 서류교부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선적 후 또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송부 후,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서류교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P. Huber and A. Mullis, op. cit., p.128; C. Sharp & Co. Ltd. v. Nosawa [1917] 2 K.b.814; UCC §2-3202(2)(e).

30) H. Flechtnar et al, op. cit., p.465.

31) Christoph Brunner, UN-Kaufrecht-CISG(2004) art. 25 n.18;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vol.3 (4th ed. 2004) (Urs Gruber) art. 25 n.29.

32) 협약 제32조.

물품의 인도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같이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술한 물품인도지체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기타의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기간을 지정해야 하며 그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의 경과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하에서 기일의 염수가 계약상의 본질적 요소임을 명시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계약전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sup>34)</sup>

## 2) 매수인의 이행지체

### (1) 대금지급지체

매수인의 이행지체는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 그리고 계약에서 명시한 기타의무의 이행지체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대금지급지체는 매수인의 가장 혼란 이행지체이다.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지급시기의 도래를 위하여, 예컨대 최고(催告)를 하거나 기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sup>35)</sup>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협약이 정한<sup>36)</sup>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고,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무역실무에서 당사자들은 혼히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좁게 이해하여 대금지급이란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송금, 계좌이체 포함)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협약상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37)</sup> 이러한 규정은 국제매매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sup>38)</sup>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예컨대 은행(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한다거나 해외의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의 대금지급의무의 일부이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위반이 된다.<sup>39)</sup>

33) P. Huber and A. Mullis, op. cit., pp.120-121.

34) H. Flechtnar et al, op. cit., p.466.

35) 협약 제59조 참조.

36) 협약 제61-제65조.

37) 협약 제54조 참조. 협약 제54조에 관하여 상세히는 A. González, "Buyer's Enabling Steps to Pay the Price: Article 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5 *Journal of Law and Commerce*, Issue No. 1 (Fall 2005/ Spring 2006) p.299 참조.

38) 오원석 역(Hommoel 저), UN 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449면.

대금지급지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지체 자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sup>40)</sup> 만약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지연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지급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임을 그리고 계약의 종료를 즉시 선언할 수 있는 사유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데, 계약상의 통화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거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에 이러한 합의를 권할 만하다.<sup>41)</sup>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가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만약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물품수령지체

매수인은 물품수령에 따른 협력의무와 물리적 수령의무를 이행해야 한다.<sup>42)</sup> 이 가운데 먼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sup>43)</sup> 예컨대 필요한 수입승인을 받고, 운송수단을 적기에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물론 매수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소인 경우 매도인이 영업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매도인이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하고, 계속적 공급계약의 경우 납품요구를 하는 것과 물품의 명세지정<sup>44)</sup> 등을 하여야 한다. 이를 매수인의 ‘협력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45)</sup>

둘째, 매수인은 스스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즉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물리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반대의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을 양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 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어야 하는 경우 중요한데, 그 경우 매수인은 수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옮기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옮기도록 하여야

39)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367-368면.

40) 대금지급지체 자체를 본질적 계약위반의 사유로 인정한다면 협약 제63조의 부가기간의 지정(최고)은 불필요할 것이다.

41) Staudinger(*Ulrich Magn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 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CISG) (2005) art. 64 n.11.

42) 협약 제60조.

43) 예컨대 계약에서 Incoterms 2000의 FOB 또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운송계약체결을 위한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J. Honnold, op. cit., pp.342-343; 동지. I.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2010, p.863.

44) 협약 제65조.

45)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족하고 해이그때매협약(ULIS 제65조)에서처럼 매도인의 물품의 교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다.<sup>46)</sup>

협약상의 물품수령의무를 지체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질적이 아닌 단순한 계약위반이 된다. 또한 수령의무의 지체는 계약에서 매도인의 이익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물품수령지체가 계약상의 본질적 요소임을 명시하거나 물품이 부패하기 쉬운 경우 또는 물품의 수령지체로 인해 고액의 창고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수령지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게 될 수 있다.<sup>47)</sup>

### (3) 기타의무의 이행지체

매수인의 기타의무의 이행지체에서 만약 당사자가 기일의 염수가 계약의 본질임을 합의하였다며 그러한 원칙에 따른다. 이행지체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약상의 주된 이익을 박탈당하거나 이익을 손실했다면 매도인은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계약의 해제는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계약 전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가능하다.<sup>48)</sup>

예컨대 부가기간 동안 원료의 공급과 같은 매수인의 협력의무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최고에 의지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타의무의 이행지체는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지 않으며,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sup>49)</sup>

## III.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

### 1. 개요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당사자들은 계약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우 드물게, 일방 당사자는 소송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의로 모호하고(vague) 애매한(ambiguous)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6) 석광현, 전개서, 226-227면 참조.

47) H. Flechtm̄er et al, op. cit., p.468.

48) 이것은 만약 부분이행 실패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의무인 경우로서 매도인이 계약 전체로부터 이익을 박탈당하였다면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일반 원칙에 따른다. 협약 제52조 제2항; 제73조 참조.

49) Peter Schlechtriem/Ingeborg Schwenger,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precht -CISG (4th ed, 2004) (Günter Hager) art. 64 n.7.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점에서 규정된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그의 의무이행 기일을 넉넉히 규정하고자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의 의무이행에 대한 시간규정에는 다소 엄격할 것이다. 물론 매수인은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만약 양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관심을 반영한 일반거래조건을 미리 명시해 둔다면 이행지체에 관한 오해와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sup>50)</sup> 그러한 경우에 표준계약조항이 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표준계약조항<sup>51)</sup>은 무효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만약 일방 당사자의 조항이 편입이 되었다면 계약의 유효성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표준계약조항이 일방 당사자의 의견을 다소 과하게 반영하였다면 표준계약조항은 계약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 2. 실무상 제안

무릇 매매계약에서 그 특징적 이행은 매도인이 담당하며, 그에 따라 실무상 계약위반도 그 것이 고의나 과실 혹은 무과실에 의한 것이건 간에 주로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sup>52)</sup> 따라서 이행지체에 따른 실무상의 제안을 위하여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모두의 경우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만을 제안한다.<sup>53)</sup>

### 1)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대비한 제안

전술하였듯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는 3가지로 구분된다. 즉,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그리고 기타의무의 이행지체이다. 매도인의 입장은 만약 자신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상대방에

50) H. Flechtner et al, op. cit., p.469.

51) 'Knock Out-Rule'이란 당사자들의 서식(약관) 가운데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충돌제거규칙' 또는 '상충조건배제규칙'이다. 협약의 해석론으로서도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이론은 양 당사자의 약관에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약관을 제외하고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계약은 합의된 계약조건 및 두 약관상 공통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체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성립 후 이루어지는 확인서면에서 약관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최후발포이론'에 의하기보다 충돌부분을 배제하는 '충돌제거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욱이 최후발포이론에 대해 UNIDROIT Principles(제2.1.11)과 유럽계약법원칙(제2:208)이 통상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최후발포이론을 취하면서도 약관충돌의 경우 충돌제거규칙을 취하는데서 보듯이, 약관충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협약의 해석론으로서도 충돌제거규칙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 석광현, 전계서, 95면, 기장준, "CISG에 내재하고 있는 미국법적 요소 분석", 「국제거래법연구」제18집 제1호(국제거래법학회, 2009), 16면. 나아가 이를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해 해결할 것으로 보는 견해(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변경된 승낙의 계약성립효과와 계약서식의 교전", 「무역상무연구」제IX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6), 146면)도 있다.

52) 허해판, 전재논문, 382면 참조.

53) 실무상의 제안에 관한 예시 조항은 H. Flechtner et al, op. cit., pp.470-475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게 너그럽고 관대한 제재를 요구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 (1) 물품인도지체

만약 당사자가 인도기일에 관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체결 시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Delivery shall be made by --- (on...). (인도는 ---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이 적용될 것이다.<sup>54)</sup> 여기의 합리적인 기간은 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도기일에 인도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매도인은 다소간의 인도지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즉각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행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면 매수인의 해제권은 온전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부가기간동안 합의된 인도일자 이후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권리 를 갖고 있다고 합의할 수 있다. 이것은 단기간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다음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가능하다.

The seller is entitled to deliver after the agreed delivery date during an additional period of (four, six etc.) week.<sup>55)</sup>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기일 이후에도 [4, 6 등]주의 부가기간동안에는 물품을 인도할 권리 를 갖는다).

위와 같은 조항의 문제점은 매수인으로서는 인도기일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인도할 의지 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 된 인도일자 이후에 인도를 할 것을 알려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

54) 협약 제33조 참조.

55) 이와는 반대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지체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The parties agree that the date of delivery specified in this contract is fixed, binding and of the essence of the contract. Any delay of delivery entitles the buyer,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any damage, to immediately avoid the contract.

것이다. 한편, 이행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기간동안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In the event of delayed delivery the bu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only after he has set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delivery and delivery is not made by the end of such period. The parties agree that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is (four, six etc.) weeks. The additional time starts running when the seller receives the buyer's notice of it.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은 인도를 위한 부가기간을 정하고, 인도가 그러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들은 [4, 6 등]주의 부가기간을 합의한다. 부가기간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가기간 통지를 받을 때부터 기산된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인도 일자에 정확히 이행을 할 것에 동의를 한 경우, 추가로 강조할 내용이 필요하다. 매도인이 기일 내에 인도를 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 운송비, 창고료, 마케팅 비용과 같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협약에서 매도인은 제79조의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책임져야 하며, 이러한 책임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한 제한은 책임의 정도와 권리의 침해 및 손해배상 측면에서 요구된다. 이에, 아래의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한다.

If the delay cause property damage or pure economic loss to the buyer, the seller is only liable in damage if he acted deliberately or with gross negligenc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apply where the delay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The amount of damage is limited to 0.1%(or some other chosen) of the value of the delivery for each full week of delay up to a maximum amount of 5%(10% or other rate)of the value of the delivery.

(만약 지체가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순수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단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은 지체가 발생하는 기간의 매 주마다 인도가액의 0.1%로 제한되며, 최대 5% [10% 등]로 제한된다).

### (2) 서류교부지체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서류교부지체는 전술한 물품인도지체와 동일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품의 인도지체에서 제안한 조항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deliver' 대신 'hand over the documents'를, 'delivery' 대신 'handing over of documents'를 사용하면 된다.

### (3) 기타의무의 이행지체

기타의무의 이행지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전술한 물품인도지체에서 제안한 조항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delivery'와 'deliver'의 표현을 'performance'와 'perform'으로 대체해야 한다.

## 2)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대비한 제안

### (1) 대금지급지체

매도인의 관심은 계약에서 정한 일자에 매수인이 정확하게 대금을 지급하는가에 있다. 대금지급에 관하여 아래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yment of the price is due without any further notic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buyer's disposal(or some other point of time)

(대금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정히 지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지연을 포함한 지연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전 대금지급 조건인 CBD(Cash Before Delivery)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수취 이후에 물품을 인도하므로 위험부담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명확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협약은 채무불이행자가 추가절차 없이 대금지급일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sup>56)</sup>은 이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서

---

56) 협약 제78조 : 일방이 대금 기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 하에서 회복가능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협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상세하는 B. Zeller,

에 이자율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sup>57)</sup>

In the event of delayed payment of a sum that is due the rate of interest shall be 10% over the base interest rat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p.a.<sup>58)</sup>

(대금지급지체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기본 이자율에 10%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약 매수인이 신용장개설을 지연한 경우에 과연 협약 제78조의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제78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의된 신용장 개설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In the event of delayed opening of the agreed letter of credit the buyer is obliged to pay interest at a rate of 5% over the base interest rate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p.a. on the sum agreed for the letter of credit as from the date agreed for the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until its actual opening 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sup>59)</sup>

(합의한 신용장의 개설을 지연한 경우,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날짜로부터 신용장이 실제로 개설된 날짜 또는 계약의 종료일까지 신용장상에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의 기본 이자율에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약간의 대금지급지체가 있는 경우, 이를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상의 통화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음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op. cit., pp.129-137 참조.

57) 협약 제78조는 제84조 제1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제78조는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78조에서는 적시에 제공되지 아니한 금부에 대한 이자지급이 문제된다. 반면 제84조 제1항은 계약해제에 따른 이익조정의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매도인은 계약 청산 시에 대금의 수령 및 이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의무는 부당이득법적 성질을 가지며 그 점에서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지급의무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제78조와 제84조 제1항에서의 이자율의 문제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김진우, “CISG 제84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기한 이익조정”,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94-95면; 동지, E. Reile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 The UN Conven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Law -,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p.197.

58) Per annum(per year).

59) 이와는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지체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즉, If the seller proves that delayed payment by the buyer caused the seller loss the buyer is only liable in damages if the delay was deliberate or the result of gross negligence by the buyer. The amount of damages is limited to an amount calculated at an interest rate of --- % p.a. on the sum in arrears and for the time during which payment is delayed. Liability for any further damages for delayed payment is excluded.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Due to high inflation of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the time for payment is of the essence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delay of payment the seller is entitled immediately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계약통화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진 경우, 당사자들은 지급시기를 계약의 본질로 합의한다. 지급지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 (2) 물품수령지체

또한 매도인은 만약 매수인이 물품인수를 지체한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며, 특히 물품이 잘 상하거나 물품 보관에 따른 창고료가 비싼 경우가 고려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If the buyer does not tak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agreed time(within three [five...] days after the agreed time)of delivery the seller is entitled immediately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만약 매수인이 합의된 인도기일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3일 [5일] 내에]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선언 수 있다).

매수인의 물품수령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계산과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약정조항을 이용하여 하루 당 얼마의 조건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한다. 구체적으로 하루당 창고료를 얼마 지급할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다.

If the buyer delays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excuse under CISG Article 79 it shall owe the sum of ---- for each day of delay as liquidated damage.<sup>60)</sup> The seller may prove that his actual loss exceeded this sum, an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the large amount.<sup>61)</sup>

60) 손해액의 입증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상에 상대방이 계약위반 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약정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일수 또는 주일 당 얼마나, 총판매대금에서 지체하는 일수 또는 주일 당 일정 퍼센트 감액 등으로 표기된다. E. Reiley, op. cit., pp.201-202; UCC §2-718; 오원석,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 條項)의 有效性과 實務的 適用에 關한 研究”, 「무역상무연구」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71면 참조.

61) 이와는 반대로 매수인은 다음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자신의 물품인수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완화를 희망할 것이다. If the seller proves that the buyer's delay in taking delivery caused the seller loss the buyer is only liable in damage only if the delay was deliberate or the result of gross negligence by the buyer. The amount of damages is limited to the

(만약 매수인이 협약 제79조상의 면책사유 없이 물품인도의 수령을 지체한다면 약정손해배상액으로서 지체 하루당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의 실제손해액이 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중 보다 많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기타의무의 이행지체

매도인은 매수인의 기타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전체를 해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기타의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 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지체가 매도인의 주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If the buyer does not perform the additional obligation of ----(the obligation should be described)at the time(within three [five---] days after the time)agreed for performance the seller is entitled immediately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만약 매수인이 합의된 이행기일 [합의된 이행기일로부터 3일 [ 5일 ]]에 [여기에 의무의 내용을 명시함]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f the buyer delays performing the additional obligation of ----(the obligation should be described)without excuse under CISG Article 79 it owes a sum of ---- for each day of delay as liquidated damage. The seller may prove that his actual loss exceeded this sum, an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the larger amount.

(만약 매수인이 협약 제79조상의 면책사유 없이 [여기에 의무의 내용을 명시함] 기타의무의 이행을 지체한다면 약정손해배상액으로서 지체 하루당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의 실제손해액이 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중 보다 많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um of ---- per each day of delay. Liability for any further damage for delay in taking delivery is excluded.

## IV. 결 언

이상 본고에서는 협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협약의 규정과 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이행지체에 관한 당사자들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제안하였다. 이행지체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표적인 이행지체인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를 다루었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대응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신들의 권리는 보장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는 제한하는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위반의 경우, 계약상 다른 의무 위반에서 적용되는 구제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이행지체를 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이행지체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게 된다면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된 이행 기간을 근소하게 위반하는 이행지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하루의 이행지체만으로도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일의 엄수가 당사자 의무의 본질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그 특징적 이행은 매도인이 담당하며, 그에 따라 실무상 계약위반도 그것이고의나 과실 혹은 무과실에 의한 것이건 간에 주로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행지체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매도인의 입장에서 제안하였다.

먼저,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예상하여, 만약 지체가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매도인은 단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예상하여,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 기타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를 예상하여, 대금지급의 확정일자 및 신용장개설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명시, 나아가 다소간의 대금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물품수령지체를 예상하여, 만약 매수인이 물품인수를 지체한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물품수령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기타의무의 이행지체를 예상하여, 기

타의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 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준과 약정손해배상액의 명시를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 기장준, “CISG에 내재하고 있는 미국법적 요소 분석”, 「국제거래법연구」제18집 제 1호, 국제 거래법학회, 2009.
- 김진우, “CISG 제84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기한 이익조정”,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원, 2009.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해설, 박영사, 2010.
- 이병문, “유럽매매법원칙상의 매수인의 구제제도”, 「무역학회지」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 \_\_\_\_\_,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LD 條項)의 有效性과 實務的適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무역학회지」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CISG) (2005) art. 49 n.10.
- Ferrari, 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 Sales Convention-25 Years of Article 25 CISG- 25 Y. L & Com. 489 (2006).
- Flechtner, H.,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2008.
- González, A. "Buyer's Enabling Steps to Pay the Price: Article 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5 *Journal of Law and Commerce*, Issue No. 1 (Fall 2005/Spring 2006) 299.
- Honnold, J.,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4th ed., Wolters Kluwer, 2009.
- Huber, P., and Mullis, A.,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Mü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vol. 6 (2004) (*Christoph Benicke*) art. 49. 25 n.19.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vol.3 (4th ed. 2004) (*Urs Gruber*) art. 25 n.29.

Peter Schlechtriem/Ingebors Schwenger,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precht-CISG (4th ed, 2004) (*Markus Müller-Chen*) art. 49 n.5.

Reiley, 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UN Conven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Saidov, D. "Methods of Limiting Damage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14, no. 2(2002).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2010.

Staudinger(*Ulrich Magn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 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CISG) (2005) art. 64 n.11.

Zeller, B. Damage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2009.

\_\_\_\_\_, "The Remedy of Fundamental Breach and the CISG: A Principle Lacking Certainty?",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11, no. 2(2007).